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 운영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 소관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6. 7. 12(화) 10: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

3. 감사대상 기관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4. 감사대상 사무

- 2015. 11. 1 ~ 2016. 5. 31까지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추가요구)
- 붙임 :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9명(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원)
 - 위 원 장 : 안주찬
 - 부위원장 : 김인배
 - 위 원 : 박세진, 안장환, 김태근, 윤종호, 한성희, 김근아, 김복자
- 감사보조 직원
 - 전문위원 : 양희규
 - 직 원 : 조희태, 이미옥

6. 감사방법

- 증인선서
- 감사상 필요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청취 병행
-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병행 실시
- 추가 감사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 관계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 현장 확인 등

7.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증인

기 간	대 상	수 감 내 용	출석요구증인
7. 12(화) 10:00	· 의회사무국	· 개의선언 및 위원장인사 · 증인 선서 ·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의회사무국장 참고인(각 담당)

8. 감사실시 결과

소 관 별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의회사무국	개 선	1. 의회소식지를 Yes구미 시정소식지로 대체 검토 ○ 의회소식지 내용이 Yes구미 시정소식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의 여지가 있으며 연간 2회 발간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의회소식지 발간 폐지 검토와 Yes구미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란을 늘려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권 고	2.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 인사 조치 ○ 의회사무국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정해진 기준을 무시하고 직원을 의회사무국으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유능한 직원을 장기간 의회사무국에 근무토록 하고 있음. 향후 명확한 인사 기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인사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 관 별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의회사무국	권 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기준 명확화 필요 ○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은 '16. 2. 23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위원장을 맡고 있음. 예결위 위원장 선임시 이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의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 향후 전체의원 간담회 시 논의 - 위원장 등)